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이정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73
----------	-------

발의연월일 : 2025. 11. 3.

발 의 자 : 이정현 · 박홍배 · 이용우
김우영 · 김 현 · 위성곤
이해민 · 윤준병 · 김태년
한민수 · 조인철 · 박선원
의원(12인)

제안이유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정학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적 우위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단일 국가의 역량으로 모든 첨단과학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개방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한편, 최근 기술 패권 경쟁 및 기술 블록화가 심화됨에 따라, 기존 가치 중립적인 국제협력에서 벗어나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이고 종합적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 및 추진체계가 미비한 상황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국제협력 주요 계획 및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 특히, 현행 법체

계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연구자 측면에서 효율적인 국제협력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바, 과학기술 국제협력 수행 과정 전반의 비효율성과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연구자가 몰입해서 자율적으로 국제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학기술 국제협력 법률 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범부처 국제협력 추진체계를 정립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지원 및 유연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연구생태계 보호를 위한 연구안보 체계를 확립하여, 과학기술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제사회 공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체계 구축 및 촉진 지원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과 국제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요 정책 및 계획 심의를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고,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에 대해서는
지원 특례를 부여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라.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성과 확산 및 해외 현지 지원을 위해 통합지
식·정보 플랫폼 구축, 국제협력혁신 허브 및 해외거점센터 등 연
계협력강화,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등 기반 강화를 추진함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및 제20조).

마. 정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외국정부 등과의 협력
추진, 해외 우수 연구자·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
하고, 국제기구 및 국내 과학기술 국제협력 주체별 국제협력 활동
지원 등의 촉진 방안을 마련함(안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바. 국제협력 과정에서 국내 연구생태계 보호 및 신뢰 기반 국제협력
을 위해 연구안보 체계를 확립함(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협력 촉진을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과 국제사회 공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 국제협력”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내 기관·법인·단체·개인(이하 “국제협력주체”라 한다)이 외국정부(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외국의 기관·법인·단체·개인 등(이하 “해외기관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교류, 정보교환, 기술이전, 연구 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국제협력 수행기관”이란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

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

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

3.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중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4.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란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5. “연구안보”란 국내외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국가·경제 안보 위협요인을 체계적으로 식별·관리하여 연구자와 연구자산을 보호하고,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국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과학기술 연구생태계가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

학기술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공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과학기술 연구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안보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제협력주체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제협력주체는 국제협력 과정에서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연구성과 등이 부적절하게 유출되거나 악용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3장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 지원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국제협력주체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2장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진체계

제5조(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활동 규제 및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 국제협력 재원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연구인력·기관의 국제교류 및 해외 우수연구인력·기관의 유치에 관한 사항
5. 국내 연구기관·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6.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 정책 및 제도 전수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에 관한 사항
8. 연구안보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되, 제6조에 따른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 설치) ①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 정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 국제협력 분야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연구안보와 관련된 정부 중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전략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전략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

⑤ 전략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구안보특별위원회 설치) ① 연구안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 산하에 연구안보특별위원회를 둔다.

1. 연구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미쳤거나 위협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관한 사항

2. 연구안보 전략과 정책·제도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국제협력주체의 연구안보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연구안보와 관련된 국가 간 협력 및 국제 원칙·절차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연구안보를 위하여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구안보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연구안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연구안보특별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안보특별위원회 위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대한 연구안보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협력 수행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과학기술 국제협력 조사·분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조

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관련 법인·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 지원

제9조(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 수요 발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 수요를 발굴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 수요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부처 간 협업 및 연계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 ①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은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정의 변경·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정·변경·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특정평가 대상이 된 경우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장기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그 경비의 총액과 연

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③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특례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이하 “국제협력 연구개발 과제”라 한다) 중 국가정책적으로 중요하고 국제협력의 시급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에 따라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국제협력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의 추진목적·성격 등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리 및 평가 절차(이하 “연구개발과제절차등”이라 한다)에 준하는 수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외 선정, 수행 관리 및 평가 등 절차를 거치기로 한 경우, 국내 연구개

발과제절차등을 생략 또는 간소화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지원 기준,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 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서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성과 소유 및 관리) ① 국제협력 수행기관이 해외기관등과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연계 되는 연구개발성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5호의 연구개발성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 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여도는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에 투입한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 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정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한민국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실시권을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소유와 실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반조성

제14조(국제협력 네트워크 연계 협력 강화) 정부는 국내외 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협력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연계 및 활용을 위하여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법인·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플랫폼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과학기술 국제협력혁신 허브) ① 정부는 국제협력 수행기관의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과학기술 국제협력혁신 허브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3. 그 밖에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지·시설·지구

② 과학기술 국제협력혁신 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과학기술 국제공동연구, 연구인력 교류 등의 국제협력 촉진
2. 해외 우수 연구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3.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③ 정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혁신 허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과학기술 국제협력혁신 허브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과학기술 국제협력 해외거점센터의 지정) ① 정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해외거점센터(이하 “해외거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해외거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외거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 간 협력의제 및 국제공동연구 과제 발굴에 관한 업무
2. 해외 과학기술 · 연구개발 · 산업 등 동향정보 조사 · 분석에 관한 업무
3. 간담회, 포럼 등 활동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업무
4. 외국 기술 도입 및 이전, 과학기술 인력교류에 대한 협의 및 지원에 관한 업무
5. 해외기관과 국제공동연구 기획 · 수행
6. 과학기술 기반 해외 사업화 및 창업 지원,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업무
7. 해외거점센터 간 협업 및 소통체계 구축

8. 그 밖에 국가 간 과학기술 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정부는 해외거점센터의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거점센터에 조직 및 운영 효율화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정부는 해외거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제3항의 성과점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⑤ 정부는 해외거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성과점검 결과가 미흡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해외거점센터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그 밖에 해외거점센터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규제 개선) ① 정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

기 위하여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련된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19조(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① 정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국제협력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2. 과학기술 국제협력 분야 인력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
3. 과학기술 국제협력 분야 인력의 경력개발 지원
4. 국제협력 수행기관과의 채용 연계를 고려한 훈련과정
5. 그 밖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분야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국제협력 수행기관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문인력을 우대하여 채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우수기관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협력 및 연구안보 역량이 뛰어난 국제협력 수행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은 국제협력 수행기관은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국제협력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정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증을 받은 국제협력 수행기관을 관련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인증기준·절차·유효기간, 인증표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과학기술국제협력진흥원의 설립) ①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 및 사업을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국가별·기술별 협력전략의 수립 지원
 2.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활동 규제 및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업무 지원
 3.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조사·분석 및 지식·정보의 관리 지원
 4. 양자·다자간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지원
 5. 국내외 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 연계·협력 강화 지원
 6.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성과 확산 등에 관한 업무 지원
 7. 국제협력혁신 허브 및 해외거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지원
 8. 해외 우수 연구기관·연구자의 유치에 관한 업무 지원
 9.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지원
 10. 연구안보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및 관련 사업 지원
-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진흥원이 아닌 자는 과학기술국제협력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장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

제22조(외국정부와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1. 외국정부와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약정·양해각서 등의 체결
3. 과학기술 국제협력 분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의 외국정부로의 파견
4. 개발도상국가 및 자원보유국가에 대한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 지원사업
5. 그 밖에 주요 국가와의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정부와 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

제23조(과학기술국제협력대사 지정 등) ① 정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외교부에 과학기술국제협력대외직명대사(이하 “과학기술국제협력대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정부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해외 우수연구자를 명예과학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동포가 설립

하여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를 재외한인과학자단체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국제협력대사, 명예과학관의 임무·자격 및 재외한인과학자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업·대학·연구소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① 정부는 국제협력주체와 해외기관등 간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공동연구 기획
2. 분야별 전문 인력, 정보 등의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3.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촉진
4. 연구개발성과 확산, 기술이전, 실용화 및 기술창업 지원
5.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재교육

② 정부는 국제협력주체와 해외기관등 간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성과가 국내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다자간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동 활성화 등) ① 정부는 국제협력주체의 다자간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동을 장려하고 국제협력주체가 이를 통하여 국제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자간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기구 설립 및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국제기구에 국내 전문가가 진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국내 유치) ① 정부는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국내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에 진출한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2. 국내에 진출한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연구인력에 대한 훈련 및 고용
3. 국내에 진출한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입지 지원
4. 그 밖에 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그 밖에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요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해외 우수 연구자의 국내 유치) ① 정부는 해외 우수 연구자의 국내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및 연구장려금 지원
2. 해외 연구자의 직계 미성년 자녀의 보육 및 정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해외 연구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내국인에 준하는 수준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건조성
6. 해외 연구자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지원 및 각종 민원행정 제도의 개선
7. 그 밖에 해외 연구자 유치·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해외 연구자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과학기술 국제협력과 관련된 해외 연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이민 절차의 완화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8조(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경쟁력 강화와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도시와의 국제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위한 연구생태계 조성 및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위하여 지역 소재 기업·대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장 연구안보 수립

제29조(연구안보 강화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국제협력주체의 연구안보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자문, 전문인력 양성, 연구안보 국제협력 활동 등 다양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연구안보 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규범의 수립에 적극 참여하는 등 연구안보 관련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 상 중요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연구안보 전략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안보 위험요소에 대한 적기 대응 등 연구안보 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안보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안보 관련 국내외 동향과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연구안보 전략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연구안보 전략 수립 및 관련 동향과 정보의 수집·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국제협력주체의 연구안보 유지 의무) ① 국제협력주체는 연구 성과 유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안보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실관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제협력 수행기관은 소속 임직원 중 국외 연구기관 파견근무, 국외출장 등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예정된 사람에게 연구안보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2조(청문)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5항에 따른 해외거점센터 지정의 취소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우수기관 인증의 취소

제33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

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